

1. 개정이유

의무경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경찰에 대한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 나. 보험이 입영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2항)
- 다. 의무경찰의 단체보험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3항)
- 라. 시행세칙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4항)
- 마.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의무경찰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21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관계부처(기재부, 병무청)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비용추계서, 별첨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 가입 및 해지
2. 보험 관련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④ 그 밖에 보험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병무청장은 제57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7조의2(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 가입 및 해지 2. 보험 관련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④ 그 밖에 보험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5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병무청장은 제57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과	
연 락 처	(02) 3150 - 2462